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 접수번호 |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
|-----------------------|---|-------------|------------|---------------------|------------|----------------|-----------------|---|
| | ① 상 호(법인명) | | ② 성 명(대표자) | | | | | |
| | ③ 사업자등록번호 |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
| 양도자 | ⑤ 사업장 소 | <u>-</u> 재지 | (전화번호 : | | | | |) |
| | ⑥ 주 소 (전화번호 : | | | | | | |) |
| | ① 상 호(법(| 인명) 세무법인 | 더조이 강남 | · 호남중앙지사 ② 성 명(대표자) | | | | |
| | ③ 사업자등 | 록번호 310- | -85–22418 |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양수자 | ⑤ 사업장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396, 강남빌딩702-1 (전화번호 : 010-4631-6069 | | | | | | | |
| | ⑥ 주 소 (전화번호 : | | | | | | | |
| | 세목 | 납부기한 | 계 | 내국세 | 교육세 | 가산금 | 국세환급 가산금 | |
| 국세환급금 | 종합소득세 | 2024.05.31 | | | | | | |
| 명세서 | | | | | | | | |
| | À | | | | | | | |
| | 세목 | 납부기한 | 계 | 내국세 | 교육세 | 가산금 | 국세환급 가산금 | |
| 양도하려는 | 종합소득세 | 2024.05.31 | | | | | | |
| 금액 | | | | | | | | |
| ы | | | | | | | | |
| | 계 | | | | | | | |
| ₩ 71A170 ⁻ | . <u>– – – – – – – – – – – – – – – – – – –</u> | /HI = TI400 | 07= 7 OLE | | 101 710 FL | =1. 1=1\ =110= | - 피 드 스 시 - 다 크 | |

)의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포함) 등을 (세무법인 더조이 강남중앙지사)에게 양도하려 고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김선미

양도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세무사 서비스 1.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신고인 신분증 사본 1부 수수료 3. 위임장 원본 1부 첨부서류 없음 4.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 1부 ※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가산금은 구 국세기본법(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산금으로 2020년 1월 1일 전 납세의무 분에 적용됩니다.